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60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피고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망 B의 소송수계인 D

3. 망 B의 소송수계인 E

4. 망 B의 소송수계인 F

변론 종결2024. 10. 31.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 피고 C과 망 B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88,888,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E, F은 각 88,888,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과 망 B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은 133,333,333원, 피고 D, E, F은 각 88,888,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와 피고 C을 대리한 망 B은 2015. 12. 8. 시흥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 2층에서 함께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 피고 C 소유인 서울 강북구 H, I 토지(이하 'J동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건물주) : 피고 C

을(동업인) : 원고

1.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 ₩600,000,000을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 조건은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

내부 공사시

중도금 ₩100,000,000

잔금은 공사 완료후 입주시 ₩400,000,000

단, 잔금은 L에서 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증서를 받은 후 지불하기로 하며 증서 미발급시 갑의 소유인

서울 도봉 H, I의 토지에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중략).

2. 동업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만기시 쌍방 합의하에 보증금 재조정하여 1회 연장 계약하기로 한다.

3. 모든 비용(세금, 급여, 공과금, 물품비, 기타 지출 경비)을 제한 순수익에 대하여 갑이 33%, 을이 6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7. 10. 11.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C

을 : 원고

1. 갑과 을의 K장례식장(시흥시 G) 동업 계약은 2017. 9. 30.부로 해지되며, 을은 67%(을의 지분) 영업권을 갑에게 양도하고(단 보증금 금 육억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을에게 존속), 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을은 K장례식장 운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중략)

3. 갑은 2017. 12. 5.부터 2019. 12. 8.까지 매달 5일에 금 5,000,000원(오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만일, 누적 3회분 이상 연체시, 갑은 을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H 및 I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4. 갑은 동업계약 해지일인 2019. 12. 8. 을에게 보증금 금 600,000,000원(육억원)을 반환한다.

5. 가. 경기도 시흥시 G 지하 1, 2층 K장례식장 건물 매각시 갑은 잔금을 지급받는 날(건물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 기준) 곧바로 을에게 금 600,000,000원(육억원)을 반환한다. 이와 동시에 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H 및 I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교부한다.

나. 만일, 건물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은 동업계약 해지일인 2019. 12. 8. 을에게 금 600,000,000원(육억원)을 반환한다.

나. 피고 C의 소외 M과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18. 9. 20. M에게 시흥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9.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11. 9. 접수 제96006호).

2) M은 2020. 8.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8. 21. 접수 제88905호).

다. M과 망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망 B은 2020. 11. 30.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 장례식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 11. 30.부터 2025. 11. 30.까지이며, 망 B은 M에게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차임으로 매월 7,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제기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하여 피고 C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1. 6. 24.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404), 위 판결은 2021. 7. 1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1. 8. 12. J동 각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345,832,514원을 배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N).

마. 이 사건 소 제기와 망 B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1) 원고는 2022. 1. 3. 망 B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망 B은 2022. 4. 8. 사망하였다. 피고 C은 망 B의 아내, 피고 D, E, F은 망 B의 직계비속으로서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의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가 되었다.

3) 상속비율은 피고 C은 1/3이고, 피고 D, E, F은 각 2/9이다.

[인정근거]

피고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갑 제1, 2,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신탁해지에

다른 신탁재산 귀속의 방법으로 M에게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M에게 약 8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망 B이 M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의 위 채권 중 400,000,000원을 망 B에게 증여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4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C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유로 수익자인 망 B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소송계속 중 망 B이 사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 B이 받은 돈 중 1/3인 133,333,333원이 채무자인 피고 C에게 복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F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C과 망 B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 400,000,000원 중 피고 E, F의 각 상속분(2/9) 이내에 해당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인 88,888,88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 F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각 88,888,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E,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88,888,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0. 11. 동업계약 해지로 인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보증금 600,000,000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위하여 피고 C 소유인 J동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준시점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0. 11. 30. 이루어졌으므로 위 시점이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시점의 피고 C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일까지 피고 C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변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신탁해지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귀속시키기 이전인 2018. 9.경을 기준으로 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살핀다.

3) 적극재산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8.

9.경 피고 C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C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7,368,682,314원에 이른다.

[적극재산 내역]

1	광주시 ○ 토지	미상
2	서울 강북구 H, 토지	345,832,514) 원고는 2021. 8. 12. 피고 C 소유의 J동 각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345,832,514원을 배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N).
3	이 사건 부동산	7,022,849,8002) 2018. 11. 9. 기준
합계	7,368,682,314	

4) 소극재산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8.

9.경 피고 C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C의 소극재산은 5,900,000,000원이다.

[소극재산 내역]

1	원고에 대한 채무	650,000,0003) 보증금 600,000,000원 + 50,000,000원[=5,000,000원×10개월(2017. 12. ~ 2018. 9.)]
2	신탁부동산에 대한 1순위 대출금액	5,220,000,000
3	P조합에 대한 채무	30,000,000
합계	5,900,000,000	

5) 소결 2018. 9.경 피고 C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7,368,682,314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5,900,000,000원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한다. 또한 위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인 2020. 11. 30.까지 피고 C의 재산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에도 피고 C의 재산은 여전히 소극재산을 상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정택

판사우민제

판사유소영

- 1) 원고는 2021. 8. 12. 피고 C 소유의 J동 각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345,832,514원을 배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N).
- 2) 2018. 11. 9. 기준
- 3) 보증금 600,000,000원 + 50,000,000원[=5,000,000원×10개월(2017. 12. ~ 2018. 9.)]